#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25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 박해철 · 김주영 · 권향엽

이광희 • 이용우 • 박지혜

박홍배 · 송재봉 · 송옥주

정성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차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외국인 력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노·사·공 동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및 인권보호 정책에 관해서 노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 권보호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동수의 노·사·공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 법률 제 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호"를 "권익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를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동수의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5.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 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익보호-----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 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신 설> 5.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 ----, 위원은 대 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획재정부 • 외교부 • 법무부 • 산 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 행정기관의 차관과 동수의 근 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 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 는 자로 한다. 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